

전주효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주효문초등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2.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 회의를 말한다.
3.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명칭) 본교 학부모회의 명칭은 “효문초등학교 학부모회”로 한다.

제4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및 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4. 그 밖의 본교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원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예: 대의원회에서 선출)

제7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회의 회장 직책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총무는 학부모회의 회계 및 실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운영)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총회 임원, 학급 대표 2인으로 구성)를 둔다.

제9조(총회) ①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수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7일 전까지 의제 및 일시,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원에게 공개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학부모 총회 임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의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회 회의는 3분의 1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본교는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기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정을 거친 본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